

제32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

행정복지위원회

검 토 보 고 서

2025. 10. 24.(금)



행정복지위원회
전문위원 고종선

- 목 차 -

1. 달성군 원어민영어교실 민간위탁 재위탁동의안	1
2.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4
3. 달성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안	6
4. 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	8
5. 달성군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	11
6. 달성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	14

달성군 원어민영어교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1. 검토과정

- 의안번호: 제2722호
- 제출 일: 2025년 10월 2일
- 제출 자: 달성군수
- 회부일자: 2025년 10월 16일

2. 제안사유

- 군민의 영어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“달성군 원어민영어교실” 위탁기간이 (2024. 1. 1. ~ 2025. 12 .31.)이 만료될 예정임
-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현행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026년부터 2년간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위탁기간 : 2026. 1. 1. ~ 2027. 12. 31.(2년)
- 나. 사업대상 : 7세 이상 아동, 초등학생, 장애인
- 다. 강의장소 : 3개 권역 4개소(화원비전센터, 논공읍 장애인복지관, 다사 문화센터, 현풍교육문화복지센터)
- 라. 운영규모 : 15교실, 총 85class, 월시수 848시간
- 마. 소요예산 : 882백만 원(군비 100%)
- 바. 위탁사무

- 1) 권역별 실용영어 강좌 개설 및 운영
- 2) 원어민 회화 중심 수업, 교재개발 및 수준별 학습
- 3) 강사 및 수강생 관리 등 운영 전반

4. 관계법령
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특성화 조례」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특성화 조례」 제5조에 근거하여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사무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.
- 본 사업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제3호 “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민간위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- 현 수탁기관인 (주)헤럴드대구본부와는 2024년 1월 재계약하여 2025년 12월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.
-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사무는 2023년부터 꾸준히 확대되어 △영어교실 추가 개소운영, △연중시행, △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2023년 대비 약 2.5배의 예산이 확대(882,000천원)되었습니다.

- 현 수탁기간의 경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결과 사업성과가 탁월(평균 92점)로 평가되었으며, 적법한 원어민 강사 채용을 위한 사전절차 및 강사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 추후 전문 커리큘럼 운영 등, 영어 전문교육기관의 지속적 참여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점에서 민간위탁 재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.

- 또한 달성군 내 아동·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의 영어 접근성 확대, 글로벌 인재양성 기반 조성 등 정책적 효과가 예상되므로, 행정 효율성과 주민편익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.

- 따라서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부합하며, 위탁의 연속성과 사업성과 측면에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
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검토과정

- 의안번호: 제2723호
- 제 출 일: 2025년 10월 2일
- 제 출 자: 달성군수
- 회부일자: 2025년 10월 16일

2. 제안사유

- 청년들의 능력개발, 고용촉진, 문화예술 활동 등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, 청년 역량강화와 지역정착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청년의 능력 개발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5조의2)
- 청년 고용촉진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5조의 3)
-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5조의4)

4. 관계법령

- 「청년기본법」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청년기본법」의 기본이념에 따라 청년정책 추진 근거를 구체화하고, 청년들의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.
- 기존 조례가 포괄적 선언에 그쳤던 ‘청년 지원사업’의 범위를 세분화하여, 능력개발·고용촉진·문화예술 활동을 명시한 점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 조치로 평가됩니다.
- 「청년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서는 청년의 행복한 삶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기본이념을 각 호의 사항들로 안내하고 있으며,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신설조문들의 해당 조문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- 다만, 새로 신설되는 조문이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세부사업과 예산 연계가 필요하며 추후 청년혁신위원회, 민간 전문가, 청년센터, 그 밖의 기관 및 단체들과 긴밀한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.
-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,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.

달성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안

1. 검토과정

- 의안번호: 제2724호
- 제 출 일: 2025년 10월 2일
- 제 출 자: 달성군수
- 회부일자: 2025년 10월 16일

2. 제안사유

- 현행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」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읍면개발자문위원회가 없으며,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」 폐지

4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폐지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읍면개발자문위원회가 없으며,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실효성이 없어 「달성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」를 정비하고자 합니다.
- 본 조례는 1964년 제정 되어 과거 지역개발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자문받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.
- 현재 읍·면 단위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, 사회단체협의회, 이장협의회 등이 사실상 지역 개발 및 행정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, 기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낮습니다.
- 이에 본 폐지조례안은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단순화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로 판단되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.

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

1. 검토과정

- 의안번호: 제2725호
- 제 출 일: 2025년 10월 2일
- 제 출 자: 달성군수
- 회부일자: 2025년 10월 16일

2. 제안사유

- 「의료·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따라 달성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의료·요양·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통합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(안 제11조)

4. 관계법령

-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의료·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(약칭: 돌봄통합지원법) 시행에 따라 달성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.
- 상위법령 돌봄통합지원법의 전면 시행('26. 3.)을 앞두고,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·장애인 등이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.
- 대한민국의 고령사회(65세 이상 인구비율 14% 이상)에 진입한지 7년 만인 2024년에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%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. 달성군 또한 2022년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, 2024년 기준 16.7%로 지속적으로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
- 그동안 분절적으로 시행되었던 사회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.
- 다만, 지역계획 수립 시 여러 사회서비스들이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제공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관련 상위법령들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것입니다.
-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, 본 조례안은 돌봄정책의 효율성과 포괄성을 제고하고, 군민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

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.

달성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

1. 검토과정

- 의안번호: 제2726호
- 제 출 일: 2025년 10월 2일
- 제 출 자: 달성군수
- 회부일자: 2025년 10월 16일

2. 제안사유

- 달성군 가족센터 위탁기간 만료 도래 및 현 수탁기관의 재계약 의사 표시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, 적격으로 의결되었고 이에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대상 현황

시 설 명	소 재 지	시 설 규 모	종사자수	비 고
달성군가족센터	현풍읍 테크노중앙대로 231	1,013.57㎡ (교육문화복지센터 1층)	31명	-

나.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

- 달성군가족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
 - 가족관계, 가족돌봄, 가족생활사업
 -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사업
 - 공동육아나눔터 운영

-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
- 지역특화사업
- 외부사업 및 공모사업

다. 조직 및 구성

구 분	계	센터장	사무국장	팀장	대리	팀원	사무원	기간제
인 원	31명	1	1	2	3	22	1	1

라. 위탁기간: 5년(2026. 1. 1. ~ 2030. 12. 31.)

마. 수탁기관 선정방식

-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성과 평가 실시 후 70점 이상 시 재계약

바. 민간위탁 추진일정

- 2025. 9. : 운영평가 서류 접수
- 2025. 9. :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

사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- 별도 첨부

아. 성과평가 결과

- 평균 92점(적합)

자. 향후일정

- 2025. 10. : 군의회 동의
- 2025. 11. : 재계약 체결 및 공보 게재

4. 관계법령
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,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·운영 조례」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달성군 가족센터의 위탁기간(2023. 1. ~ 2025. 12.)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, 현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위탁운영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.
- 달성군 가족센터는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센터 설치·운영 조례」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
① 가정문제 예방·상담 및 치료, ②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, ③ 가정생활·가족문화 운동의 전개, ④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, ⑤ 가족지원서비스 욕구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- 기존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은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된 전문기관으로, 지난 위탁기간 동안 가족센터 운영을 통해 가족돌봄, 공동육아나눔터,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뿐만아니라 군비지원사업 및 외부사업 등을 유치하여 다양한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-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(2025. 12.)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이 재계약 의사 표시를 해 옴에 따라,
- 현 수탁기관을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92점(평균 70점 이상이면 재계약 가능)으로 적정으로 의결되었으며, 사업의 연속적인 측면이 효율적이므로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.

달성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

1. 검토과정

- 의안번호: 제2727호
- 제 출 일: 2025년 10월 2일
- 제 출 자: 달성군수
- 회부일자: 2025년 10월 16일

2. 제안사유

- 달성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지정기간 만료 도래 및 현 수탁기관의 재계약 의사표시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, 적격으로 의결되었고 이에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

- 달성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

나.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

- 아이돌보미 관리 : 아이돌보미 모집 및 교육, DB 관리, 아이돌보미 활동 지원 등
- 이용자 가정 관리 : 서비스 이용신청 접수, 가정방문 및 상담조사, 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, 인접지역 이용가정의 긴급 사유 발생 시 연계, 안전사고 관리, 서비스 모니터링 등

- 사업운영 관리 :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 실적 등 보고, 사업홍보, 민원관리 등

다. 조직 및 구성 : 아이돌봄 전담인력 5명(대리1, 팀원4)

라. 위탁기간: 5년(2026. 1. 1. ~ 2030. 12. 31.)

마. 수탁기관 선정방식

-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성과 평가 실시 후 70점 이상 시 재계약

바. 민간위탁 추진일정

- 2025. 9. : 운영평가 서류 접수
- 2025. 9. :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

사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- 별도 첨부

아. 성과평가 결과

- 평균 89점(적합)

자. 향후일정

- 2025. 10. : 군의회 동의
- 2025. 11. : 재계약 체결 및 공보 게재

4. 관계법령

- 「아이돌봄지원법」,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」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달성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 기관의 위탁기간(2023. 1. ~ 2025. 12.)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, 현 수탁기관인 달성군 가족센터 위탁운영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.
- 달성군 아이돌봄지원사업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」에 따라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·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① 가족생활 사업 ② 지역공동체 사업, ③ 공동육아나눔터 운영, ④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, ⑤ 지역특화사업 및 외부 공모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- 기존 수탁기관인 달성군 가족센터는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2009년 개소하여 ① 가족교육·상담 사업팀 ② 가족문화·특성화 사업팀, ③ 아이돌봄·행정운영팀을 구성하여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. 또한 2024년 가족상담 우수기관 선정 등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입니다.
-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(2025. 12.)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달성군 가족센터 재계약 의사 표시를 해 옴에 따라,
- 현 수탁기관을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89점(평균 70점 이상이면 재계약 가능)으로 적정으로

의결되었으며, 사업의 연속적인 측면이 효율적이므로 본 민간위탁
재계약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.